

법 원	2004년				2005년				2006년 1월~6월				2004~2006년 6월			
	면소	무죄	무죄 공시	공시 비율	면소	무죄	무죄 공시	공시 비율	면소	무죄	무죄 공시	공시 비율	면소	무죄	무죄 공시	공시 비율
서울서부지방법원	-	111	25	22.5	2	97	1	1.0	1	29	-	0.0	3	237	26	10.8
의정부지방법원	2	95	9	9.3	5	148	8	5.2	1	57	3	5.2	8	300	20	6.5
인천지방법원	2	187	8	4.2	7	158	1	0.6	4	73	3	3.9	13	418	12	2.8
수원지방법원	7	320	12	3.7	8	294	7	2.3	1	109	6	5.5	16	723	25	3.4
춘천지방법원	1	37	-	0.0	3	51	-	0.0	1	36	-	0.0	5	124	-	0.0
대전지방법원	6	220	16	7.1	5	98	23	22.3	-	84	8	9.5	11	402	47	11.4
청주지방법원	6	95	2	2.0	2	57	1	1.7	-	17	1	5.9	8	169	4	2.3
대구지방법원	10	180	9	4.7	2	137	4	2.9	4	61	1	1.5	16	378	14	3.6
부산지방법원	5	212	23	10.6	5	151	18	11.5	4	51	4	7.3	14	414	45	10.5
울산지방법원	1	37	1	2.6	-	51	1	2.0	-	22	1	4.5	1	110	3	2.7
창원지방법원	1	89	-	0.0	2	134	1	0.7	1	51	-	0.0	4	274	1	0.4
광주지방법원	2	207	6	2.9	1	121	6	4.9	2	77	3	3.8	5	405	15	3.7
전주지방법원	-	80	1	1.3	1	72	2	2.7	2	37	-	0.0	3	189	3	1.6
제주지방법원	-	16	-	0.0	-	22	1	4.5	1	9	1	10.0	1	47	2	4.2
합 계	83	2,469	130	5.1	69	2,190	94	4.2	34	968	34	3.4	186	5,627	258	4.4

\* 주 : 무죄공시비율=(면소+무죄)/무죄공시

○문병호 위원

◆제척·기피제도의 활성화 필요성

- 법률적 근거
- 형사소송법

-제17조 (제척의 원인)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. <개정 2005.3.31>

1. 법관이 피해자인 때
2.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
3.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, 후견감독인인 때
4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, 감정인,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
5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, 변호인, 보조인으로 된 때
6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
7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, 심리에 참여한 때

- 민사소송법

-제41조 (제척의 이유) 법관은 다음 각호 가

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(除斥)된다. <개정 2005.3.31>

1.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,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·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
2.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
3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(鑑定)을 하였을 때
4.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
5.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. 다만,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최근 3년간 법관 제척·기피·회피 현황

-민사재판의 경우 2004년 191건 신청, 2005년 175건 신청 가운데 인용된 건은 1건도 없음.

-2006년 6월까지 130건의 신청 가운데 단 2건만이 인용됨.

-형사재판의 제척·기피·회피 현황은

- 2004년도 34건 중 1건도 없으며, 2005년도 34건 가운데 2건만 인용됨.

- 2006년 6월 현재 21건 가운데 인용된 건은 1건도 없음.

○ 제척·기피·회피 제도의 필요성

- 재판은 공정성을 첫째로 함.

-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혈연, 지연, 학연 등이 사업이나 일의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.

- 판사가 소송 당사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판결에 대하여 수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크게 내포함.

-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.

<최근 3년간(04. 6~06. 6), 법관 제척·기피·회피 현황>

○ 민사재판

연도별 법원별	2004년		2005년		2006. 1~6	
	신청	인용	신청	인용	신청	인용
서울중앙지방법원	72	-	42	-	38	-
서울동부지방법원	17	-	4	-	8	-
서울남부지방법원	5	-	7	-	2	-
서울북부지방법원	8	-	12	-	3	-
서울서부지방법원	8	-	6	-	6	-
의정부지방법원	8	-	1	-	7	-
인천지방법원	4	-	8	-	11	1
수원지방법원	16	-	24	-	5	-
춘천지방법원	2	-	6	-	5	-
대전지방법원	10	-	11	-	-	-
청주지방법원	-	-	4	-	5	-
대구지방법원	9	-	11	-	10	-
부산지방법원	6	-	15	-	10	-
울산지방법원	-	-	2	-	1	-
창원지방법원	8	-	7	-	13	1
광주지방법원	9	-	6	-	3	-
전주지방법원	9	-	4	-	-	-
제주지방법원	-	-	5	-	3	-
합 계	191	-	175	-	130	2

주: 위 기피신청에는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의 제척·회피 사건이 포함됨.

○ 형사재판

연도별 법원별	2004년		2005년		2006. 1~6	
	신청	인용	신청	인용	신청	인용
서울중앙지방법원	5	-	8	-	5	-
서울동부지방법원	3	-	-	-	3	-
서울남부지방법원	-	-	5	-	3	-
서울북부지방법원	2	-	3	-	1	-
서울서부지방법원	2	-	1	-	1	-
의정부지방법원	-	-	1	-	1	-
인천지방법원	1	-	-	-	-	-
수원지방법원	1	-	2	1	1	-
춘천지방법원	-	-	2	-	2	-
대전지방법원	5	-	-	-	-	-
청주지방법원	-	-	3	-	1	-
대구지방법원	1	-	1	1	1	-
부산지방법원	3	-	3	-	1	-
울산지방법원	-	-	1	-	-	-
창원지방법원	-	-	-	-	-	-
광주지방법원	4	-	2	-	-	-
전주지방법원	4	-	2	-	1	-
제주지방법원	3	-	-	-	-	-
합 계	34	-	34	2	21	-

주: 위 기피신청에는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의 제척·회피 사건이 포함됨.

◆ 북한 이탈주민 이혼신청 처리 지연 문제

□ 북한 이탈주민 이혼신청 처리 지연 문제

○ 북한 이탈주민 이혼신청 현황

- 2003년 6건, 2004년 146건, 2005년 47건, 2005년 26건이 접수됨.

- 2006년 8월 현재 8건이 처리되고 217건이 미제로 남아 있음.

- 처리된 8건도 취하한 건이 7건이고 1건만 판결.

<2000년 이후 탈북자 이혼신청 현황>

2006. 8. 31. 현재

연도	구분	접수	처리	미제
2003		6	-	6
2004		146	8	138
2005		47	-	47
2006		26	-	26
합 계		225	8	217

- 이혼소송이 급증한 것은 최근 북한에 남아